電子商去來에 관한 國際的 動向과 對應方案

International Movement and Korea's Response of Electronic Commerce

이 현 정* 김 태 현**
Hyun-Jung Lee Tea-Hyun Kim

요 약

최근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어 나아가면서 가상공간에서의 상거래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확산과 아울러 전자상거래에서 현행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들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결국, 인터넷라운드의 대응 및 전자상거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범화 작업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At present, electronic commerce is relatively small, but it may crease on a large scale in the near future, the increasing use of electronic commerce over Internet raises question about issues in cyberspace. For that reason this study I identified several problems which currently represent an obstacle for the wider use of electronic commerce mechanisms over Internet and contemplated the international movements and Korea's response of electronic commerce on major issues. Eventually, in order to cope with Internet Round and ensure the stable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in Korea, the government needs to construct a predictable standards and commercial environment, suitable to the both the situations of Electronic Commerce, for business conduct on the Internet.

1. 서 론

가상공간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경제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기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 미국을 위시한 선진 세계 각국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의 잠재성, 발전가능성을 인식하고 시장선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상거래가 여러 가지 효용성을 가지고 있어 그 발전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 혹은 상관행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세계 각국은 자국의 입장을 국제규범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자국 내의 경제환경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예상되는 변화와 주요 문제들에 대해 경제·사회·문화·법적 측면에서의 장단기적인 계획으로 이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각 국가와 관련 국제 기구에서의 동향을 분석하여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각국의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OECD무역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논

* 정회원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강사, 경제학박사
nam-lee@hanmail.net
** 정회원 : 청호컴넷 컴퓨터사업본부 금융영업부
kthyun@chunghocomnet.com

의현황을 점검하여 이와 상호 보완관계에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WTO, UNCITRAL, APEC 등의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후 전자상거래와 무역으로 연결시켜 우리의 통상정책에서의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자상거래의 개념

2.1 개념

전자상거래개념은 1989년 미국방성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1993년 미연방정부의 구매/조달 프로그램에서 이 용어를 채택하면서 일반화되었다. 1994년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WWW)의 출현으로 인터넷의 대중화 및 확산에 힘입어 전자상거래는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EC)는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와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발생한 새로운 상거래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홍보, 카탈로그의 비치 및 열람, 견적서의 작성, 계약성립의 확인, 결제, 기업내부의 주문접수 처리, 고객서비스 등 개인과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체를 전자화 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전자상거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의 특징에 따른 분류이다. 광의의 전자상거래란 전자문서교환(EDI), 광속상거래(CALS), 인터넷, 전자우편, 팩스, 파일전송 등을 이용하여 전자매체를 통해 거래당사자들(개인, 기업, 정부 모두 포함)이 마케팅, 주문, 배달, 대금결제 등 일련의 상거래 과정과 정보 전달 및 수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협의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루어지는 상품의 주문 및 대금결제 등의 상거래를 말한다[1]. 둘째,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따른 분류로 구조화된 전자상거래와 비구조화된 전자상거래로 분류된다. 구조화된 전자상거래란 표준화된 거래형식과 데이터 교환방식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말하며, 협의의 전자상거래라 할 수 있다. 비구조화된 전자상거래란 거래당사자간에 특정한 표준 없이 자유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전자우편이나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2]. 셋째, 전자상거래 당사자에 따른 분류이다. 거래당사자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분류하면, 기업간, 개인과 기업간, 기업과 행정기관간, 개인과 행정기관간의 전자상거래로 분류할 수 있다[3]. 넷째, 제품인도방식에 따른 분류로 온라인(on-line) 거래와 오프라인(off-line) 거래로 분류된다. 온라인 거래는 신문, 잡지, 서적, 음악, CD, 영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화가 가능한 재화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온라인 상의 전송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래를 말하며, 오프라인 거래는 인터넷상에서 광고, 주문 등의 활동만 이루어지고 실제 제품의 인도는 기존의 거래양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2 전자상거래의 영향과 문제점

전자상거래는 정부정책, 기업 및 소비자,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상거래관행에 혁신을 일으킬 만큼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요 논쟁으로는 인증, 거래의 신뢰성과 비밀보장, 기업설립과 효과적인 전자계약을 위한 원칙, 취급내용, 프라이버시와 소비자보호, 저작권·지적재산권 침해, 지불체계와 전자화폐, 과세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상공간을 통한 전세계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관성 있는 국제적 체제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3.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3.1 OECD의 논의동향

1980년대부터 전자상거래의 개별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3개의 지침과 1개의 선언문으로서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신상에 관한 데이터의 국가간 전송에 관한 지침(1980. 9), 국가간 데이터 전송에 관한 선언문(1985. 4), 정보시스템의 보안에 대한 지침(1992. 11), 암호화 정책에 관한 지침(1997. 3)이 있다.

1995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OECD산하의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ICCP)에서는 'GII-GIS정책 요건' 및 'GII-GIS 정책 권고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1997년 정상회담에서 승인되었다. GII-GIS 정책 권고안은 정보 인프라의 개발과 확산, 정보 인프라에의 접근과 활용, 멀티미디어,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응용과 서비스 등 3부문으로 되어있다.

또한 1997년 11월 핀란드 투르크에서 '지구촌 전자상거래 장벽의 철폐'(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를 주제로 전자상거래 장애요인 확인 및 정부에 바라는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 정책이슈를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되었다[4]. 전자상거래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OECD 회원국의 관련 실무자가 모여 처음으로 함께 논의를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와 기회, 분야별 전망, 전자상거래의 잠재성, 인프라의 접근 및 허용, 사용자 및 소비자의 신뢰구축,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 지불 및 물류시스템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1998년 캐나다 오타와 회의에서 '국경없는 세계 :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잠재력 실현'(A Borderless World : Realiz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이란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사용자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구축, 디지털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의 확립,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인프라의 확충,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혜택의 극대화 등이 논의되었다[5]. 이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첫째, 전자상거래 관련 OECD 행동계획(Action Plan) 채택 둘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소비자 보호에 관한 3개 안건의 채택과 조세에 관한 보고서 승인이 있었다.

3.2 APEC에서의 논의동향

APII(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태 지역 내 개별국가들의 정보통신을 접속시킴으로써 아·태 전역에 걸쳐 하나의 통합된 초고속 정보통신을 구축하는 작업,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촉진을 위한 기본틀', APEC에서 채택한 APII의 5대 목표와 10대 핵심원칙을 제시하였다[6]. APEC에서는 전자상거래에 관세나 내국세를 부과하지 않는 협정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화를 추진하고 있다. APEC은 미국이 1997년 7월 발표한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본원칙(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이후, 전자상거래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APEC이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다른 점으로는 APEC 역내 국가간의 차이로 인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이 APEC내에서 의견수렴을 통한 일관된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할 수도 있으나, 도출된 합의는 전자상거래의 전세계적인 확산을 위해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1997년 11월 개최된 제5차 APEC 정상회의 및 제9차 각료회의에서 정상들은 예견가능하고 일관된 규제환경과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을 증진하는 작업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그 후 1998년 2월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98년 제1차 무역·투자위원회 회의에서 APEC 전자상거래 실무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한 후, 동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실행지침 프레임워크(A Reference Framework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를 채택하였다. APEC에서 전자상거래의 논의는 1단계로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회원국

간 정보를, 2단계로 전자상거래 원칙 및 기술협력 방안 등 정책사안에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1998년 11월 쿠알라룸푸르 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실행조치를 위한 청사진'(APEC Blueprint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민간, 정부, 민간관계의 역할에 대한 권고사항,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 추진, 가상 전자상거래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개발, 선진국(2005년), 개도국(2010년) 종이 없는 무역 실현, Y2k문제 대처를 위한 지역 긴급대책 전문가 회의 99년 상반기 개최하는 것 등이다.

3.3 WTO의 논의동향

국제무역질서 논의무대인 WTO는 무관세화를 비롯한 무역관련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98년 2월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규범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3월에는 무역개발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전자상거래 이슈가 WTO차원에서 공식화되었다. 이어 5월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 결과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대하여 1999년 각료회의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각료선언을 채택한바 있다.

WTO 일반이사회는 1998년 7월 전자상거래에 관한 무역관련 쟁점들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회원국간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1998년 9월 일반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채택하였다. WTO 전자상거래 논의는 일반이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들 작업과정에서 민간부문을 참여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서비스교역이사회는 GATS 법률시스템에서의 상거래 문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를 보고할 예정이다. 상품교역이사회는 GATT 1994년 규정에 관련된 다자간 무역협정과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을 점검할 것이다. 특히 전자적 수단이 무역절차를 단순화시키는지 여부, 정보기술제품의 교역에 대한 각료선언에 따라 수행된 작업에서 야기되는 관련 문제이다. 지적재산권이사회는 특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작업을 고려하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지적재산권문제를 점검한다. 무역개발위원회는 특히 개도국과 경제, 금융, 개발 요구를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개발의 의미를 점검한다. 정부조달위원회는 정부조달업무에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작업프로그램을 추진한다.

1998년 3월 WTO 사무국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법적 문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정책문제를 분석하고 전자상거래와 WTO와의 관계를 다룬 '전자상거래와 WTO의 역할'(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WTO)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WTO 사무국 소속의 경제학자들이 저술한 이 연구는 상업적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잠재적인 무역상의 이익을 검토하고 있다. WTO는 전자상거래가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1998년 5월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세계적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 따라 WTO 일반이사회는 다음의 특별회기까지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무역관련 쟁점을 검토할 종합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선언의 가장 중요한 점은 회원국들의 전자적 송달에 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이 존속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실이다.

3.4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1996년 6월 UNCITRAL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최종 채택하고, 1996년 12월 16일 제85차 유엔 정기총회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본 모델법은 모든 국가들이 서류에 기초한 통신문 형식의 정보자료보관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여 전자

문서의 사용을 규율하는 입법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자상거래에 관해 국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법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적인 장애와 불명확성을 제거하였다. 또한 관련 국제협약의 유용한 해석수단이 되며, 국제거래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특징으로는 모델법 형식을 취함으로써 각국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는데 참고가 되며,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국제거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소비자보호, 정부기관의 관여가 문제되지 않는 순수한 상사거래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는 본 모델법이 전자상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표준화된 형식으로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EDI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그에 국한하지 않고 전자우편을 통한 전자메시지의 전송, 인터넷을 이용한 자유로운 형식의 메시지 교환까지 모두 망라한다[7].

4. 전자상거래 국내외 입법동향과 추진현황

4.1 미국

입법사례로는 우선 미국 변호사 협회(ABA)의 '디지털 서명 가이드라인'과 디지털 서명법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서명 및 인증기관에 관한 법률, 제도적 검토 하에서 작성된 것이다. ISC 가이드라인은 초안 형태로 널리 배포되었으며, 유타주가 처음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상당부문 참조하여 디지털서명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으로 정보라이센스계약법(UCC 제2B편)이다. 1990년대에 와서 경제가 급격한 변화를 하면서 오늘날 서비스부문이 오히려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정보산업이 대부분의 제조업을 추월하고 있는 바, 이것이 UCC 제2B편을 제정하게 된 이유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주는 이 법을 주법으로 채택하여 입법할 것이기 때문에 UCC 제2B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UCC 제2B편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거래는 물품매매가 아니라 정보사용권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이다[8].

또한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Law)과 통일상법전(UCC) 제4A편이 있다. 전자자금이체법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분야의 법률이기 때문에 거액 자금이체, 즉 도매금융분야에 관한 법제의 정비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NCCUSL(미국 통일주법위원회 전국회의)이 전자결제에 관한 법안 마련에 착수하여 1989년 8월 각 주에 UCC 제4A편 '자금이체'를 규정하여 현재까지 미국의 대부분 주가 이를 제정법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기타 관련법률로는 연방조달효율화법(1994), 인터넷 비과세법(1998), 서류사무제거법(1997), 문서감축법(1995) 등이 있다.

미국은 인터넷에서의 기술우위를 배경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에 가장 앞장서고 있으며,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하되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를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주요 응용분야로 선정하여 수요창출 및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정책은 12개 부처로 구성된 FECAT(Fedral Electronic Commerce Acquisition Team), 표준 및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상무부산하 국가표준기술원(NIST), 국방부 및 국세청 등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은 1994년부터 16개 지역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 ECRC)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는 1997년 7월에 2년간의 연구를 거쳐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최근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을 전자상거래의 자유무역지대로 만들기 위한 미국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민간주도, 정부규제 방지, 최소한의 정부개입, 정부의 인터넷 특성인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관된 원칙제정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전자상거래 시

논란의 소지가 많은 3개 영역의 9개 쟁점 분야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은 표면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범세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조성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현안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제시하고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협상을 통해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2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올해 4월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과 '온라인상의 소비자보호'(Online Consumer Protection)에 관한 두 가지 법안을 초안의 형태로 발표하였다. 유럽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시장은 미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4년에는 'Electronic Commerce Initiative'를 공식 출범시켜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7년 4월에는 '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를 채택하여, 2000년까지 추진해야 할 4개의 핵심분야로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제품 및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역내에 일관된 제도적 틀 마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식제고를 통해 역내기업에 유리한 기업환경 조성, 국제기준의 마련 등을 선정하였다. EU집행위 내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업무는 DG(Directorate General)Ⅲ(산업담당) 및 DG XⅢ(정보, 통신, 연구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7월에는 미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추진을 견제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본 선언'을 채택하였다. '본선언'의 핵심내용으로 미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추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9]. 미국의 세제가 법인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 위주인 반면, 유럽국가들은 상품에 대한 소비세 중심이어서 '인터넷 상거래 무관세화'가 세수를 감소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새로운 형태의 세금부과는 금지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3 일본

1993년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인터넷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전자상거래 도입 및 추진은 민간주도의 미국과는 달리 통산성, 우정성, 대장성 및 법무성 등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산성은 '전자상거래 정비 연구회'가 전자상거래의 제도적 환경의 정비에 관한 포괄적인 검토를 한다. 1996년 2월 설립된 '전자상거래 진흥협의회'(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 of Japan : ECOM)를 통해 전자상거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EDI표준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7년에 전자화폐에 의한 대금결제 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했다. 우정성은 1995년 10월 '사이버 비즈니스 협의회'를 설립하여 전자우편협의회와 공동으로 INGECEP(Integrated Next Generation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수행, 즉 전자상거래의 실용화 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성은 민법 및 상법의 검토를 통해 법적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장성은 금융정보시스템센터에 전자결제연구회를 설치,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정보시스템 안전대책 연구회를 설치하여 정보화와 네트워크의 진전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수사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10].

4.4 우리 나라

4.4.1 국내법규

우리 나라에는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일반적 법규가 없고, 관련 특별법에서 개별적 규정만이

존재하여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른 상거래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기존의 상거래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전자거래기본법(1999. 2. 8)으로 민간주도의 전자거래촉진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부가 민간의 전자거래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자거래를 지정 운영하는 등 민간경제활동의 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전자거래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써 UNCITRAL 모델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전자서명법(1999. 2. 5)이 있다. 현행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인정하는 법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법규들은 각각 특정행정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정됨으로써 전자문서 교환 등 전자계약에 있어서 법적 효력의 불일치와 법적 공백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지적되어졌고, 메시지 내용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법적 개념 정의 및 효력을 통일하고, 디지털 서명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서명법의 제정이 요청된다.

4.4.2 추진동향과 문제점

우리 나라는 후발주자이지만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정부부처와 민간부문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시작은 1996년 인터넷에 쇼핑몰이 개설된 후부터이다. 1996년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정부는 2001년부터 업종별, 산업별 전자상거래를 본격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전자상거래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키로 하였고, 조달 EDI, 국방 CALS 등 공공부문 시범사업을 통한 초기수요제공으로 공공부문의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고 유용성을 검증하여 전자상거래의 민간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산업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등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자상거래 관련 요소기술 및 통신 프로토콜 표준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범부처적인 정부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전자상거래 지원센터(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ECRC) 지정 및 단계적 시범사업전개 및 시설자금 융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 촉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보보호(국가정보원), 전자화폐(한국은행),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정보통신부), 암호화·보안 등의 요소기술개발 및 표준화(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전자상거래의 구현형태는 사이버 쇼핑몰 형태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 KAIST는 전자상거래 연구센터인 ICEC를 중심으로 인터넷 쇼핑몰 및 가상은행 서비스를 위한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Metaland를 설립하였다. 데이콤은 전자상거래 관련사업은 쇼핑몰 사업과 전자지불 게이트웨이,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실험프로젝트, CommerceNet Korea 활동 등 4개 분야로 추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핵심요소의 하나인 금융결제를 위한 전자화폐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전자화폐 운영 추진, 금융결제원이 전자화폐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서 법령규정의 통합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며, 민간 부문간 EDI와 전자상거래 활용의 확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행위를 지나치게 전자서명에 의존하고 EDI 운용자와의 관계 또는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

5. 대응방안

5.1 기본입장과 분야별 대응방안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따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11]. 기본적인 입장으로 첫째, 시장기능중시 및 민간주도로 정부관여를 최소화하고 민간자율의 시장지향적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생산·유통분야의 전자상거래를 확산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글로벌 마케팅을 지향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국제적인 기술기준, 규범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기반 확충 및 범정부적 대응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급진적 논의전개에 대하여 통산부를 중심으로 재경원,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통신 인프라 조기구축 및 개방적·적극적 자세로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해야한다.

대응과제로는 관세, 내국세, 지적재산권보호, 프라이버시보호 및 소비자보호, 보안과 암호화문제, 내용물구제 등이 있다. 첫째, 관세인 경우 미국이 전자상거래 관련설비에 추가적인 무관세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물리적 운송에 따르는 거래까지 무관세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내국세인 경우 우리나라는 서비스이외의 상품거래까지 포함될 경우를 대비하여 과세할 수 있는 방안과 내국세에 미치는 효과를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국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저작권, 특허,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상표권과 인터넷 상호보호를 위해 WIPO 등에서의 저작권 협약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프라이버시보호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개인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관련 정보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이나 소비자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독립된 규제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제3기관에 의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안과 암호화 문제로 무엇보다 암호기술 이용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되며 보안, 인증, 암호화 기술 등에 대해서는 국제표준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기술은 민간업계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국내의 호환성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표준에 대한 종합조정에만 관여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인터넷 내용물 규제는 각국의 가치관, 문화적 특성, 도덕적 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치관, 문화, 도덕적 기준을 고려하여 불건전한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공복리 목적의 정보유통 규제활동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등급제 제도, 여과기술, 연령식별제도 등의 이용하기 쉬운 기술적 솔루션, 자율규제 기술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2].

5.2 국내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방안

전자상거래가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의 간섭이 최소한에 머물러야 하지만 전자상거래의 초기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민간주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요청되며,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확대의 기반이 될 국내수요기반을 확충을 해야 하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안, 인증, 암호화, 전자서명 등은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호환성 및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관련 요소기술의 표준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기존 통신망의 고속·고도화와 함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13].

전자상거래는 가상공간(cyberspace)을 통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이 가능하므로 치열한 경쟁압박과 함께 세계시장으로의 진출기회가 제공되는 도전과 기회의 양면성을 제공한다. 소규모의 중소기업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초기설비비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경쟁력만 갖춘다면 국지적 시장의 한계를 넘어 엄청난 이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회가 제공된다. 국내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멀티미디어 콘텐트 산업의 육성과 CALS/EC시스템 구축 및 운용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 관련자금지원을 확충하고 정보화 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다품종 소량생산 등을 통한 수출촉진을 들 수 있다[14].

5.3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

모든 국가의 공공부문이 재화와 서비스의 가장 큰 유일한 조달자라는 이유로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정부행정의 조달,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전자상거래 원칙의 적용을 통해 직접적 발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발전을 장려하는 법, 규제조항, 인프라 환경조항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15].

또한 현재 국내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식이 부족한 많은 기업들이 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기술적, 자본적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전자상거래의 불확실한 감소를 위한 인증이나 환불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정부와 관련된 기업들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교육을 통해 정부조달에 있어서 광범위한 전자상거래 도입으로 기업경영자들의 의식을 전환시킴으로서 민간기업간의 불투명거래는 경영자들 스스로 기업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원과 아울러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결 론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 증대로 전자상거래가 점차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자국의 비전과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시장의 선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주요 통상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전자상거래에 맞는 국제규범을 제정함에 있어서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전자상거래의 보편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경제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본문에서 살펴본 주요 분야별 대응방안에 관하여 국내현장에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둘째, WTO 논의 및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GATS 규범에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준비되어야 한다. 셋째, 통상정책 이슈 및 논의에서 제시된 내용 중 투명성원칙에 따른 우리 나라의 무역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외서비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국제무역 관련 조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도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국내수요 개발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들은 향후 새로운 대외 통상현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이들 기구에서의 논의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진행중인 국제규범화 작업 등에 우리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각종 관련법들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맞추어 제정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OECD, "Business to Consumer Electronic Commerce: Survey of Status and Issues", OECD DAFFE/CP(97)14, 1997. http://www.oecd.org

[2]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p. 29참조, 1998.

[3] Esprit, "Electronic Commerce - An Introduction", 1988.
http://www.ispo.cec.be/ecommerce/answers/

introduction.html
[4] OECD "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 1997.11. http://www.oecd.org/dsti/sti/it/ec/prod/dismantl.htm 참조.
[5] OECD, "A Borderless World: Realiz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1998. http://www.oecd.org
[6] 한국전산원, "1997년 국가정보화백서", p. 793, 1997.5.
[7]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with Guide to Enactment 1996 with additional article 5 bis as adopted in 1998. http://www.uncitral.org/en-index.htm
[8] The American Law Institute and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Uniform Commercial Code Revised Article 2B "Licenses", 1997.11.
[9] 서민교, "인터넷 라운드의 대두와 그 대응방안", 무역학회지 제23권 3호, p. 250, 1998.10.
[10] 정보통신 동향연구실, "전자상거래추진을 위한 일본의 대응", 정보통신정책 제10권 14호 (통권 214호), pp. 87~88, 1998.8.
[11] 통상산업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월간 전기정보 제23권 8호, p. 35, 1997.8.
[12] 김유찬·이성봉,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89, 1999.
[13] 김영탁 외, 데이터 통신 및 컴퓨터망, 정익사, p. 495, 1999 참조.
[14] 미국무역대표부,http://www.ustr.gov
[15] OECD, "Electronic Commerc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Government" pp. 64~67, 1997 참조.

◐ 저 자 소 개 ◑

이 현 정
1993년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1995년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석사)
2000년 경북대학교 무역학과 졸업(박사)
2001년~현재 경북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계명문화대 강사
관심분야 : 전자상거래분야

김 태 현
1998년 영남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2000년 경북대학교 무역학과 졸업(석사)
2001년~현재 (주)청호컴넷 컴퓨터사업본부/금융영업부
관심분야 : 전자상거래분야